

Global Report

드론 촬영 영상 등의 취급 가이드 라인

1. 가이드 라인의 확립 목적과 위치 메김
2. 촬영 영상 등의 취급 개념
3. 구체적 유의사항

제1장 가이드 라인의 확립 목적과 위치 메김

우리나라에서도 드론¹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드론은 간단히 「하늘에서 촬영」이 가능하며, 토사 붕괴, 화산 재해, 터널의 붕괴 등 현장에서의 피해·재해 상황조사, 교량, 터널, 하천이나 댐 등의 인프라 모니터링, 소화(消火)·구조활동, 측량, 경비 서비스, 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향후 많은 사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한편, 이 드론을 이용하면 보통 예기치 않은 시점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 방의 내부 등을 거주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도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하늘에서 촬영이 가능했지만 드론을 이용함에 의해 더 많은 사람이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하늘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용·활용을 통한 경제 사회활동의 발전과 privacy(개인정보보호) 등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론을 이용하여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을 촬영하고,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은 민사·형사·행정상의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 ① privacy(개인 정보보호) 침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 촬영자는 피촬영자에 대해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 배상 책임²을 지게 된다.
- ② 또 목욕탕,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 사람들이 통상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장소를 촬영한 경우에는 형사상, 경범죄법³이나 각 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의 폐 끼침 방지 조례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
- ③ 더욱이,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에 의한 촬영인 경우에는, 무단으로 촬영 행위는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개인 정보의 취득으로,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⁴(이하「개인 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의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시멘트 생산량은 ○○○○○○○○ 1995년부터 연간 약 14억 톤에서 2010년에는 연간 20억 톤으로 증가되어 왔다.

¹ 이 지침에서 드론은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기타 항공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기로 구조상 사람이 탈 수 없는 것들 중에서, 원격조작 또는 자동조종(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비행 시킬 수 있는 소형 무인기를 말한다.

² 민법 제709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 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

³ 경범죄법 제1조「왼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것을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같은 조항 제23호「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그 외 사람이 통상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장소를 몰래 들여다 본 사람」

⁴ 개인 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 하여 서는 안된다.

또한 드론에 의한 촬영영상 등을 인터넷상에서 열람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영상 등에 Privacy(개인 정보보호) 및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는 자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고, 해당 영상 등은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는 「전송을 방지하는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드론에 의한 촬영 영상 등을 인터넷상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 사고 방식을 정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 라인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 가이드 라인은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자가 피촬영자에 대해 Privacy(개인 정보 보호) 침해 등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대처 방안을 예시함으로써, 법적 위험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드론에 의한 촬영 행위와 개인 정보 보호법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촬영 영상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 통신사업자에 대해, 촬영 영상 등의 송신 방지 조치의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을 예시함으로써, 전기 통신사업자가 피촬영자·발신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경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 등을 정리함에 의해, 안심하고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가이드 라인이 사회적 의의가 있는 드론의 이용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가이드 라인은 현시점에서 대처 방안을 나타낸 것이며, 드론의 이용 방법 등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변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과거 총무성에서는 공공의 도로에서 촬영한 도로 주변의 화상을 편집하여, 인터넷상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개시 당초,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의 침해 등이 지적 되었기 때문에, 총무성의 「이용자 관점에 입각한 ICT 서비스의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회」⁵에서 논점을 정리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노력의 일환으로 「촬영 상태의 배려」나 「모자이크 처리(Blur processing) 등을 제언하여⁶ 관계 사업자에게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

⁵ 이용자 시점에 입각한 ICT 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회(좌장: Horibe Masao Hitotsu bashi대학 명예교수)

http://www.soumu.go.jp/menu_sosiki/kenkyu/11454.html

⁶ 이용자 관점에 입각한 ICT 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회 제1차 제언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35957.pdf

제2장 촬영 영상 등의 인터넷상의 취급에 관한 개념

1. 기본 개념

드론에 의한 촬영 행위에 의해, Privacy나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촬영 행위의 위법성은 ① 촬영의 필요성(목적) ② 촬영 방법·수단의 상당성 ③ 촬영 대상(정보의 성질)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촬영 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해당 영상 등을 인터넷상에서 열람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 가능하게 한 행위 자체도 불법이 된다⁷. 또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확산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자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고, 해당 영상 등은 인격권을 기반으로 「전송을 방지하는 조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권리의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Privacy 침해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후에 공개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해 생기는 불이익과를 비교 형량(比較衡量)하여 판단되고,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후에, 침해가 사

회 생활상의 인정(受忍)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Privacy와의 관계

Privacy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⁸, 최근의 판례에서는 타인에게 함부로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 여부가 Privacy로서 보호를 받는 기준이 되어 있다^{9,10}.

⁷ 대법원 2005년 11월 10일 제1 소 법정 판결(와카야마 毒카레 사건 보도 民集 59·9·24 28)

「사람의 용모 등의 촬영이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용모 등이 촬영된 사진을 공표하는 행위는 피촬영자의 상기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⁸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사생활상의 영역이 Privacy로서 보호 받는다고 받아들이는 견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자주적으로 컨트롤하는 권리를 Privacy의 권리라고 받아들이는 견해 등이 있다.

⁹ 대법원 2003년 9월 12일 제2 소 법정 판결 (民集 57·9·783)

학적번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것을 개시(開示 : 공개 법정에서 분명히 표시함)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에 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로부터 「Privacy에 관한 정보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¹⁰ 종전에는 도쿄 지방법원 1964년 9월 28일 판결(「연회 후」 사건 판시 385·12)에서 다음의 판시가 참고가 되어 있다.

개인에 관한 정보가 Privacy로서 기밀로 보호 받기 위하여는, 「① 사생활상의 사실이나 사생활상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우려가 있는 것일 것 ②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개인의 입장인 경우,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일 것, 바꾸어 말하면 일반인의 감각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것에 의해 심리적인 부담, 불안을 느끼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③ 일반인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일 것, ④ 이러한 공개에 의해, 해당 개인이 실제로 불쾌, 불안의 마음을 느낀 것」

Privacy에 관해서는 공개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해 생기는 불이익과의 비교 형량(比較衡量)에 의해, 침해의 여부가 판단되는데¹¹,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소와 함께 해당 개인의 주거의 외관의 사진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Privacy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¹². 실내의 모습, 차량 번호판 및 세탁물 기타 생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사물(私物)이 찍혀 있는 경우에도 내용이나 찍힘의 방법에 따라서는 Privacy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토지의 소유권은 민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그 토지의 상하에 이른다라고 해석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드론을 임의의 토지의 상공에서 비행시킨 경우에는, 그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 형태에 비추어 토지 소유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된 것이라면, 그 행위는 토지 소유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¹³.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공원 조례나 청사관리 규칙 등을 활용하여, 공원이나 청사 등 관리 구역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¹⁴. 더욱이 2015년 9월 항공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되게 되어 있다. 본 개정에 의해, 드론 등의 무

인 항공기에 대한 공항 주변이나 민가 밀집 지역 상공 등의 비행과 야간이나 사람·물건 근처에서의 비행 등은 국토교통 대신의 허가·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¹¹ 대법원 2003년 3월 14일 제2 소법정 판결(民集 57-3-229)

「Privacy 침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공표되지 않는 법적 이익과 이것을 공표하는 이유를 비교 형량(比較衡量)하여 전자가 후자에 우월하는 경우에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本件 記事가 주간지에 게재된 당시의 피상고인(대상 소년)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해당 범죄 행위의 내용, 이것이 공표됨으로써 피상고인의 Privacy에 속하는 정보가 전달되는 범위와 피상고인이 받는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本件 기사의 목적과 의의, 공표시의 사회적 상황, 本件 기사에서 해당 정보를 공표하는 필요성 등, 그 사실을 공표되지 않는 법적 이익과 이것을 공표하는 이유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것을 비교 형량(比較 衡量)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¹² 도쿄 지방법원 1998년 11월30일 판결(「Johnny's 잇달아 Map·Special」사건 판시 1686·68)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택 등 주거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공표되지 않는 이익은, Privacy의 이익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라고 해야 한다.」

¹³ 「국회 의사당, 총리 관저 기타 국가의 중요한 시설 등, 외국공관 및 원자력 사업소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2015년 9월 11일 현재).

¹⁴ 예를 들어, 도쿄都는 2015년 4월에 도립공원 조례의 「공원의 관리에 지장이있는 행위의 금지」를 근거로 도립공원·정원 관리자에게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통보했다.

¹⁵ 항공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 주변이나 민가 밀집지역 상공에서의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또 이러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동법 제132조 2의 규정에 따라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비행 시키는 것이나 제레, 젓날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상공의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

또 예를 들어, 드론의 비행이 인정되어 있는 공공의 장소^{15,16}에 있어서도¹⁷ 주거의 담장 보다 높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담장에 의해 사람의 시야에 들어 가지 않는 영상 등을 촬영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촬영·인터넷상에서 공개는 Privacy 침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공공의 도로에서 촬영한 도로 주변의 화상을 편집하여 인터넷상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서비스와 비교하면, Privacy 침해의 위험성은 한층 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① 주택지에 카메라를 향하지 않도록 하는 등 촬영 상태를 배려한다. ②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주거내의 생활 상황을 추측 할 수 있도록 私物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실시하는 등 Privacy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Privacy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체적인 Privacy 침해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진의 내용이나 촬영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3. 초상권과의 관계

초상권에 대하여, 사람은 승낙 없이 함부로 자기의 용모와 몸매를 촬영·공개되지 않는 인격적인 권리를 가진다. 촬영·공개 목적·필요성, 그 용모 등을 고려하여, 인정(受忍) 한도를 능가하는 촬영·공개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이 된다¹⁸.

공공의 도로나 그에 준한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의 용모 등을 촬영·공개 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재판례에 의하면, 공공의 장소에서 보통의 복장·태도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촬영·공개하는 것은 인정(受忍) 한도내로서 초상권 침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초상권 침해를 긍정적으로 한 사례에서는 특정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용모를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 등의 사정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공공 장소의 정경을 찾아서 촬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는 부정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

¹⁶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사람에 부딪치는 등 도로를 통행중인 차량이나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한 상태로 비행시키는 않는 한, 드론을 도로의 상공에 비행 금지시키지 않는다. 더욱이, 도로에 사람들이 모여, 일반 교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비행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드론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도로 교통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와 관련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단순히 드론을 이용하여 도로의 상공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¹⁷사찰, 관광지나 이벤트라도 드론의 비행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¹⁸전술의 대법원 2005년 11월 10일 제1소 법정 판결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외모 등을 촬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하는 인격적 이익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용모 등의 촬영이 정당한 취재 행위 등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사람의 용모 등을 승낙 없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 행위, 법률상 불법이 되는가 여부는 피촬영자의 사회적 지위, 촬영된 피촬영자의 활동 내용, 촬영 장소, 촬영 목적, 촬영 상태, 촬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촬영자의 상기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 생활상 인정(受忍)의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공공 장소에서의 정경을 기계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사이에 사람의 용모가 들어가 버린 경우, 특정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공의 장소의 정경을 찾아서 촬영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평범한 복장으로 공공의 장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또한 용모를 판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를 넣거나 해상도를 떨어 뜨려 공개하기도 하는 한, 사회적인 인정(受忍) 한도 내로서 초상권 침해는 부정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촬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피촬영자의 승낙 없이 주거의 담장 밖에서 촬영자가 발돋움을 한 자세로, 거택의 한실 인 식당 주방내의 피촬영자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受忍) 한도를 초과하여 있다고 해석된다¹⁹.

또 유흥업소 등으로 출입하는 모습 등 도로에 있어서의 촬영,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화상이나 타인의 주거내의 생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화상인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Privacy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사례별로 개별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예를 들어, 드론으로 산업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하는 자를 추적하여 얼굴 사진이나 번호판 촬영에 성공했을 경우 등, 촬영 그 자체는 공익 목적으로 허용되지만, 영상 등의 공개는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²⁰.

¹⁹ 도쿄지방법원 1988년 6월 23일 판결(Judge 713·199「주간 Friday」초상권 침해사건)

²⁰ 도쿄지방법원 2007년 8월 27일 판결(Judge 1282·233)

「촬영된 영상은 나중에 사용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촬영 행위가 위법인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촬영의 결과, 얻어진 영상의 사용에 대해서도, 해당 사용 행위의 목적이 당초의 촬영 행위에 상정되어 있는 목적과 괴리되어 있는 등, 해당 사용 행위가 당초의 촬영 행위 당시에 상정된 사용 방법과는 전혀 별개의 행위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촬영자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생활상의 인정(受忍) 한도를 넘어, 새로운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인 영상의 사용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제3장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드론에 의해 영상 등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는 사람은, 촬영시에는 피 촬영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Privacy 침해 등에 해당 여부는 영상 등의 내용이나 촬영 방법에 좌우되는 면이 크고, 최종적으로는 사례별로 판단되기 때문에, 드론에 의해 영상 등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다음의 주의사항은 어디까지나 Privacy 침해 등이 되지 않기 위한 대응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미로 촬영을 하는 경우나 흥미 위주로 영상 등을 수집하는 경우 등 드론에 의한 촬영 자체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Privacy 침해 등이 될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개인의 Privacy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위법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1. 주택지에 카메라를 향하지 않는 등 촬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것

- 주택 근처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카메라의 각도를 주택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거나 줌 기능을 주택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배려를 하여 촬영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 특히, 고층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각도를 수평으로 함에 의해 주거내의 전모가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등에 수평으로 카메라를 향하지 않도록 할 것.
- live streaming에 의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촬영 영상 등에 모자이크를 넣는 등의 배려(아래 2 참조)가 곤란하기 때문에, 주택지 주변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촬영 영상 등을 전달하지 않을 것.

2. Privacy 침해 가능성이 있는 촬영 영상에는 모자이크를 넣는 등의 배려를 할 것

- 만일 사람의 얼굴이나 번호판, 문패, 주거의 외관, 주거내 거주자의 모습, 세탁물 기타 생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私物이 촬영 영상 등에 찍혀 버린 경우에는 Privacy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삭제, 촬영 영상 등에 모자이크를 넣는 등의 배려를 할 것.

3. 촬영 영상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할 것

- 송신 방지 조치의 요청에 대해, 빠르고 쉽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할 것. 그 절차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인터넷상에서 삭제 의뢰를 받

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의 사정도 감안하면서, 담당자, 담당 창구 등을 명확히 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화 대응도 할 수 있도록 할 것.

- Privacy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송신 방지 조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Providers(공급자) 등이 「특정 전기 통신 업무 제공자의 손해 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²¹ (이하「Providers」책임 제한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근거로, 구체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업자 단체 등 (Providers 책임 제한법 가이드 라인 등 검토 협의회)가 작성한 「Providers 책임 제한법 명예 훼손·Privacy 관계 가이드 라인」²²에서는 다음의 ①, ②와 같이 정해져 있어서 참고할 것.

- ① 일반의 개인으로부터 피촬영자가 식별 가능한 촬영 영상 등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게재의 상황으로 볼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촬영 된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송 방지 조치를 하여도 손해 배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가), 나)의 경우 등, 송신 방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바로 Privacy나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 유원지 등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군상(群像)으로 촬영한 사진의 일부에 찍혀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특정한 본인을 클로즈업 한 것이 아닌 것.
나) 범죄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사진 등 실명 및 얼굴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되어 있는 것.
- ② 분명히 미성년의 어린이라고 인정되는 얼굴 사진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친권자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²¹ Providers 책임 제한법은 권리 침해 정보가 유통 된 경우에, Providers 등이 이것을 삭제 또는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정보가 적절하게 삭제되는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Providers 등이 정보를 삭제해도 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② 발신자에게 삭제에 동의 여부를 조회했지만 7일 이내에 반론이 없는 경우에는 Providers의 책임이 면책된다.

²² Providers 책임 제한법 명예 훼손·Privacy 관련 지침

http://www.telesa.or.jp/consortium/provider/pdf/provider_mguideline_20141226.pdf

(참고) 개인 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드론에 의한 촬영 영상 등은 ① 문패의 이름이 판독 가능한 상태로 촬영되어 있고, 개인의 용모에 대해,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② 이러한 영상에 모자이크를 넣는 등의 가공을 하여도, 가공전의 영상도 저장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 해당한다.

개인 정보 보호법 제17조는「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 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의 예로서는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몰래 촬영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그 촬영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 정보의 취득에 해당되어, 개인 정보 보호법의 위반 행위가 될 위험성이 있다.

또 촬영자가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관한 이용 목적의 특정(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 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동법 제16조), 취득시의 이용 목적의 통지 등(동법 제18조)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더욱이, 드론에 의한 촬영 영상 등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그 개인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경우,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는 안전 관리 조치(동법 제20조) 등을 강구해야 되는 것 외에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가 해당 데이터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제공의 제한(동법 제23조)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동법의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인, 5000인분 이상의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 활동에 이용하는 사업자이며, 일반 개인이 취미로 촬영하는 경우 등은 동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